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5
----------	-----

제출년월일 : 2000년 5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도세를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에 따른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 주요골자

### ① 국가유공자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인 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도세를 면제하도록 함 (안 제2조 제3항)

### ②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 및 명칭 변경

-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 지역신용보증재단법('99. 9. 7 제정 공포, 2000. 3. 1 시행)에 의거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안 제26조)

조례(안) : 별 첨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기타 참고자료 : 별 첨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②(생략)</p> <p>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u>1급 내지 6급</u>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p> <p>-----<u>1급 내지 7급</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현행	제정 (안)
<p>사망·혼인·해의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p> <p>1.~ 4. (생략)</p> <p>④(생략)</p>	<p>----- ----- ----- ----- ----- ----- -----</p> <p>1.~ 4. (현행과 같음)</p> <p>④(현행과 같음)</p>
<p>제26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p> <p>①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 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신용보증조합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p>	<p>제2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p> <p>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 -----충북신용보증재단----- ----- ----- ----- ----- ----- ----- ----- ----- ----- ----- ----- ----- -----</p> <p>②-----충북 신용보증재단----- -----</p>

## 참 고 자 료

- 지방세법 (부분발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분발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분발췌)
-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부분발췌)
- 행정자치부(안) 사본

## 관련법규 (부분발췌)

###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99. 8. 31 신설, 2000. 1. 1 시행)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99. 9. 7 제정 공포)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인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도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당해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은 이사회와 결의로써,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99. 2. 2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하여 중소기업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① 조합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전 문	FAX	전문 번호 4749
	발행일 서분 2000. 3. 27	타자수 제련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 행정자치부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3703-5059 / 전송(02) 3703-5552  
 세 제 과 과 장 김 대 영 / 사 무 관 박 창 용 / 담 당 자 강 필 구

문서번호 세제13400 - 376  
 시행일자 2000. 03. 27  
 공개여부 공개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세정담당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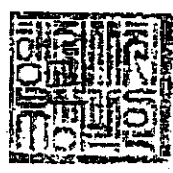
선 달	3월		지	
정 수	일자	3. 27	시	
	시간		결	
	번호	(482)	재	
	처리과	세정담당과	공	
	담당자		람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한 지방세 면제 확대요청이 있어 시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9개)에서 개정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봉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반영여부를 결정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국가유공상이자 지방세면제확대 검토자료 1부.  
 2. 특별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3. 특별시(광역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4.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5.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 행정자치부장



수신처 : 01-07, 10-16



##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3항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